

##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제관 조감도



## 목 차

### ■ 건설관련 소식 ..... 1

- 대형 건설공사만관 합동 긴급 점검 실시
- 경남도, 지방관리항만 인프라 확충 적극 추진
- 경남도,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 창원~부산간 도로 2단계 구간 10월 개통 예정
- 진주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
- 양산시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취소
- 의령군 낙서 울산~여의제 구간 명품 자전거 길 조성
-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길 개통

### ■ 지식정보 ..... 7

- 책임감리제도에서도 발주청의 공사관리 가능
- 국토부, 방화동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 부실 건설재료, 공급부터 원천봉쇄
-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감리·CM,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지급

- 국토부, 기술형 입찰 행정규칙 제, 개정
- 국토부,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상시 개선
- 경남도, '경남 미래 50년 추진단' 구성가동
-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조례개정 추진
- 2013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1社當 공사실적, 대·중·소기업간 격차 줄어
- 2013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 최신법령 및 관련정보 ..... 16

### ■ 신기술 정보 ..... 22

### ■ 건설기술심의 현황 ..... 23

### ■ 계약심사 현황 ..... 24

### ■ 기술인 나눔 정보 ..... 25

## 대형 건설공사 민관 합동 긴급 점검 실시

▶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115개소

경남도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올림픽대로 상수도 공사 작업자 7명 실종사고 등과 관련 유사사고 예방과 하절기 집중호우·태풍내습 등을 대비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115개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대형공사장 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소, 사업장 내 안전관리실태, 배수설비 관리 및 절·성토 사면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안전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115개 현장중 17개 현장에 대하여는 민·관 합동점검을 98개 현장에 대하여는 발주청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91건의 현지지정, 49건의 보완, 2건의 재시공, 3건의 검토 등 총 14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현장별 안전관리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수방자재 정리 미흡, 비상연락체계 미구축, 절·성토 사면보호 미흡 등 시정사항이 있어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보완 및 재시공 건에 대하여는 조치 후 조치결과 제출 및 사후

유지관리 철저 등을 발주청 및 현장에 통보하였다.

경남도는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건설공사장 민·관 합동 점검 전경>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인팀당  
(055)211-4622

## 경남도, 지방관리항만 인프라 확충 적극 추진

▶ 총 783억원(금년도 197억원) 투입

경상남도가 지방관리항만의 인프라확충으로 도시와 항만이 조화로운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총 사업비 783억중 금년도에 197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삼천포구항내 대형 어선의 접안시설 부족에 따른 선박의 안정적인 접안 및 원활한 물동량 수송에 편리하도록 53억원(금년도 25억)을 투입하여 접안시설 150m, 연결교량 50m 등을 설치하고,

통영항 강구안(내만)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기존 강구안내의 어선을 수용할 수 있도록 130억원(금년도 85억원)을 투입하여 어선대체부두 600m를 당동과 미수동 일원에 축조하기로 하였다

그 외 사업으로는 장승포항 일원에 89억원(금년도 20억원)을 투입하여 친수시설 36천㎡를 조성, 경상남도가 남해안 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하고 도서지역민 및 관광객의 원활한 운송지원으로 지역균형개발에도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경상남도에서는 계속하여 항만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통영항에 크루즈선 등이 추가적으로 접안할 수 있도록 다목적부두를 조성하는 등 지방관리항만이 원활한 수출입 화물의 처리와 레저·관광문화가 함께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 자료 : 도 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055)211-3972

## 경남도,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 7월 22일 진주시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부지에서, 동남권 내 뿌리산업 ‘컨트를 타워’ 역할 수행

경남도는 7월 22(월) 오후 5시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신축부지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재홍 산업통상부 제1차관, 김재경, 박대출 국회의원, 이창희 진주시장,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기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는 경남도와 진주시가 지난 2011년 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뿌리산업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 같은 해 12월 옛 진주 교육지원청 건물에 임시청사를 개소하고 그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착공에 이르렀다.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조감도>

센터는 18,577㎡의 부지에 405억 원(국비 150억 원, 도비 150억 원, 시비 105억 원)의 사업비로 시험생산동 3동, 기업지원동 1동, 연구지원동 1동 등 총 5개동 연면적 8,545㎡의 규모로 각종 시험장비 설치와 함께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센터가 완공되면 동남권 내 뿌리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뿌리산업의 첨단화 촉진 및 조선 및 항공산업의 중대형 부품 금형·소성가공 지원 등 도내 주력산업 구조고도화의 주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매출증대 7,200억 원, 고용창출 4,800명, 부가가치 창출 1,70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남도는 지난 40여 년 동안 창원 의 기계산업과 거제 조선해양사업이 국가성장을 주도해 왔지만 후발주자인 중국 등 경쟁력에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 이라면서,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진주시에 뿌리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서부권 균형발전과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여 경남미래 50년을 준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의 5대 핵심전략 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 지능형기계시스템, 항공우주, 첨단나노융합, 기계융합소재 산업과 연계하여 주력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남의 미래 50년 전략산업의 발판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지식기계담당  
(055)211-2716

## 창원~부산간 도로 2단계 구간 10월 개통 예정

▶ 창원 완암IC~ 김해 율하IC 구간 17km 개통

경남도는 창원시와 김해시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창원~부산간 도로 22.4km 중 창원 완암IC에서 김해 율하IC까지 17km를 올 10월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부산간 도로는 만성적인 창원터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도와 경남하이웨이주식회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창원 완암에서 부산 생곡까지 22.48km를 개설하는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소형차의 경우 2005년 불변가 기준으로 1개 영업소당 880원의 통행요금을 징수하여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된다.

사업비는 민간투자비 2,846억원, 보상비 1,428억원 등 총 4,274억원을 들여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단계 성주사IC에서 상점IC까지 7.4km는 2012년 4월 개통되어 이용 중에 있고, 2단계 구간 창원 완암IC에서 김해 율하IC까지 17km가 올 10월 완공될 예정이며, 3단계를 포함한 전 구간은 2015년 12월 개통될 계획이다.

현재 완료된 1단계 구간은 민간투자자가 건설한 도로임에도 아직까지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2단계 구간이 올 10월 11일 완료되면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통행요금 및 징수시기를 결정하고 유료도로로 통행료 수납공고 후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창원 완암IC에서 김해 율하IC 구간 사업 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주식회사가 관리운영하게 되며, 운영기간은 2년 2월로 3단계가 준공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도에서는 도로 개통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개통 전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여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부산간 도로가 개통되면 만성적인 창원터널의 교통체증 해소와 도심지 진입 차량 감소로 매연, 소음 등이 줄어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도 재정점검단 민자관리담당  
(055)211-4134

## 진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

▶ 계약심사 업무의 제도개선으로 예산절감 효과 기대

진주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이번 개정사유는 계약심사 업무를 운용함에 있어 계약심사 대상사업 등 불합리한 내용을 안전행정부 예규 『계약심사 운영요령』 등에 맞게 수정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계약심사 대상기관을 진주시 지분을 50% 이상인 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하고, 지금까지는 3억원 이상의 공사만 계약심사 대상이었으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 종합공사인 경우 3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이상,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등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상 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설계변경은 5억원 이상 사업중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등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주시 이순주 감사관에 따르면 “계약심사제도의 원년인 2011년에는 175건에 9억8천만원, 2012년에는 198건에 6억1천만원, 2013년 상반기까지 126건에 8억9천만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올리는 등 계약심사제도의 기반을 다져왔으며, 이번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의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는 물론이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한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 자료 : 진주시 감사관실  
(055)749-5082

## 양산시,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취소

▶ 사업주체 부도파산 및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위해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양산시는 동면 금산마을 인근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방치건축물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지난 1991년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착공하였으나, 1992년 3월 11층 골조공사중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서 착공 8개월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그 후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및 청산종결 등으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토지가 경매처분 되는 등 장기간 공사중단 및 방치건축물로 존치되어 오던 중 2005년 6월경 토지 경매낙찰자에 의해 철거작업에 돌입했으나, 채권자들의 채권문제가 불거지면서 철거가 중단되어 수년 째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산리 일대 국도 35호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금산휴먼시아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심속의 흉물로 전락하고, 인근 청소년들의 탈선현장 및 우범지역화 등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청산인, 토지소유자, 사전분양계약자에 의한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20년 이상 장기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재난발생 우려 및 도시미관 훼손 등의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철거명령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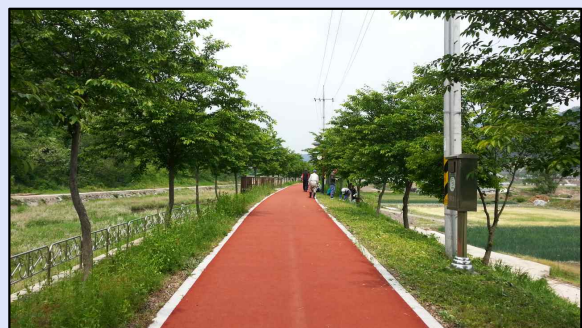
현재 양산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처분 후 청산인과 토지소유자에게 취소처분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통지 중이며, 자진철거가 장기화 될 경우 양산시 자체 예산확보 후 행정대집행 하고 그 비용을 청산인과 토지소유자로부터 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산시의 이런 확고한 의지가 20년 이상 도심속의 장기흉물로 방치되어 오던 중단 건축물의 철거조치로 도시미관 향상 및 인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양산시 건축과  
(055)392-3051

## 의령군, 낙서 울산~여의제 구간 명품 자전거 길 조성

의령군은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 및 걷기 운동자의 편의를 위해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 길의 낙서면 울산~여의제 구간 왕복 13km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 가을철 명품 자전거 길로 만들 계획이다.



<자전거길 조성 전경>

또 가려면 가례리 자전거 도로 변에는화장실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전거길 점검 정비와 기반시설 구축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6월말까지 자전거도로 및 보도주변 풀베기 실시와 가로등 일제점검 정비, 노후·파손된 의자 20개소를전면 교체하는 등 관내 자전거도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를 벌였다

■ 자료 : 인형군 건설도시과  
(055)570-2741

## 총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길 개통

▶ 제주 올레길, 지리산에 둘레길이 있다면 거제에는 섬&섬길이 있다.

섬&섬길의 한 구간인 총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이 드디어 완성,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통식을 가졌다. 총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조성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전체 8.3km의 탐방로이다.

거제시에서는 거제 섬&섬길 18개 구간 265km를 중앙부처 사업공모 등에 꾸준히 응모해 201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그 구간은 북부권에 1~6Route인 '대봉산 해안경관산책길', '칠천량 해전길', '맹종죽순 체험길', '대금산 진달래길(등산코스)', '앵산피꼬리길', '대금산 진달래길(트레킹코스)'이다.

서부권에는 7~11Route의 '가조도 노을길', '고려촌 문화체험길', '산달도 해안일주길', '거제역사문화 탐방길', '계룡산 둘레길'을 중부권에는 12~13Route의 '총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길', '양지암등대길-녹색경관길'이다. 마지막으로 남부권에는 14~18Route의 '천주교 순례길-국토생태탐방로 1노선', '지세포성 탐방길-국토생태탐방로 2노선', '학동 동백숲길', '바람의 언덕길', '무지개길'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험로를 예상하고 있다.

2011년에 제18Route인 남부면에 있는 '무지개길'을 거제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함으로써 섬&섬길 사업의 첫 삽을 떠, 제12Route인 총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2012년도 사업으로 완료했다. 제14Route인 일운면 공곶이 일원의 천주교 순례길(국토생태탐방로 1노선)과 제15Route인 지세포성 탐방길(국토생태탐방로 2노선)은 환경부 사업공모에 당선되어 2012년 4억, 2013년에 11억을 확보해 공사 진행 중에 있다.

거제시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섬&섬길을 조속히 완성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개통식 행사를 계속해 마련할 계획이다.

■ 자료 : 거제시  
(055)570-2741

### 책임감리제도에서도 발주청의 공사관리 가능

책임감리제 공사에서 발주청(공사관리관)은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등 감리원의 전문성을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민원처리, 감리원의 지도감독,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업무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13. 4.15)

#### 제6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공사관리관의 업무범위)

⑤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에 대한 지도·점검(근태사항 등)
5. 각종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 추진
6.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발주청으로부터 검토·지시 사항 확인 검토 보고
8.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13.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등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3

### 국토부, 방화동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에서 발생한 교량상판 붕괴사고(2명 사망, 1명 부상)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 붕괴나 전도(顛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의 대하여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운영(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6)

위원회는 명지대 박영석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7.31부터 8.13까지 2주간 활동할 예정이며, 위원회 운영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3

### 부실 건설재료, 공급부터 원천봉쇄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건설재료의 품질확보 의무를 공급자까지 확대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재사용시 품질인증을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을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하였으나,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 유통을 억제하지 못하여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레미콘 업자의 품질관리 책임범위가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는 데에 한정되어,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가 곤란했고, 특히, 건설에 적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반품된 레미콘의 유통이 빈번했음에도 이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다.



그러나, 금번 개정을 통해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에 대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함으로써, 저질 건설재료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무작위적인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개정된 법률은 오는 7월 16일 공포 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

##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위험한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방치하면 처벌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 (사회기반시설 등) 교량, 터널, 댐, 건축물 등 시특법에서 정한 1, 2종 시설물
- \*\* (관리감독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동안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관리주체가 동 시설의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번 시특법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급 이하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행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등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 감리·CM,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지급

▶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합...대가 기준 간 불균형 해소 기대

앞으로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뀌에 따라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감리·CM 대가 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CM의 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연말까지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감리 대가는 정액적산 방식, CM 대가는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단순히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며, 대가 기준도 선진 외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실비정액가산 방식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별로 기준인원 수를 제시하고, 공사 유형, 대상 지역,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통합 대가기준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기존 감리·CM 대가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토목, 건축, 설비, 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가칭)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4년 상반기에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O44)201-3573

## 국토부, 기술형 입찰 행정규칙 제,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새로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턴키 비리감점 관련규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도 개정하였다.

관련 행정규칙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O44)201-3565

## 국토부,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상시 개선

### ▶ 실적공사비 보완, 발주청의 일방적 계약금액 조정 관행 개선 등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감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7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17개 과제를 개선하였다.

\* 국토부 기술기준과장(팀장)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설계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4대 공사(공단), 건설업체(용역업 포함) 관계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

개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발주(한국○○공사, 설계조정을\* 적용 등)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협의단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시행)하였던 위법한 관례 등을 개선하였으며,

\* 1994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시중노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공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적용해 오던 제도(노무비 = 정부노임단가/시중노임단가)로써 시중노임의 70~80% 수준

\*\*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04년부터 도입하여 운용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하여 실적단가가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하여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적단가 산정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보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적단가 산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산정과 품의 조사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하고 실적단가와 품셈의 조사부터 적정성 산정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 하였으며, 공사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한 활증기준 마련을 위하여 상반기중 현장실사가 완료된 공종은 금번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13.7월)에 반영하고, 공사비 산정시 건설기계가격의 등락에 따른 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가격을 분리하여 매년 조사가격을 발표기로 하였다.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제안공법”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개선제안공법은 공사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하여 발주청이 승인하면 절감된 공사비의 70%를 시공자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사실상 적용사례가 미미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여부를 심의토록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100억원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에 예산당국, 전문가 및 발주청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실적공사비는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출현 등 제도 취지가 변질화 되었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며,

동 TF에 참여한 건설단체 등의 호응이 높아 당초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이던 합동 TF를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매 분기별로 관련협회와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TF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적정가격 거래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1

## 경남도, '경남 미래 50년 추진단' 구성·가동

▶ 경남의 미래 50년 전략 사업 본격 추진

경남도는 경남의 미래 50년 전략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남 미래 50년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50년 경남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도와 시군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의미이다.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청 실·국장, 18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비롯하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개발공사, 대학교수,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민 합동기구로 운영된다.

총괄 추진기구인 총괄추진팀은 마스트플랜 작성, 자원확보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주기적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장동력 확충, 기반시설 구축, 신산업 개발을 주제로 3개 분과(성장동력 분과, 기반시설 분과, 신산업 개발 분과)를 설치하여 개별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계획이다. 특히, 신산업 개발 분과는 기존 선정 사업 이외에도 신규 국책 사업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경남도는 우선적으로 8월까지 외부 전문가 위촉과 도와 시군의 조직 정비를 완료한 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사업 추진을 가시화 할 방침으로, 원활한 기구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기획관실에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 미래 50년 추진단은 도와 18개 시군이 경남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총력대응을 위한 기구로, 사업예산 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경남 미래 50년 사업추진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달 새로운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산업육성과 같은 성장동력 육성사업, 시군별 특성화된 관광산업 육성, 진주 부흥프로젝트, 마산 재생 프로젝트와 같은 구도심 활력 제고사업 등 시·군별로 36개의 전략사업들을 선정해서 발표한 바 있다.

■ 자료 : 도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055)211-2314

##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조례개정 추진

### ▶ 경남의 미래 50년 전략 사업 본격 추진

경남도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2011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임대기간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지원기간은 2년으로 2회 연장가능하며, 세대 당 지원한도액은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퇴거 시 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24세대에 235백만원(도비 94, 시군비 141), 2012년도 65세대에 585백만원(도비 175, 시군비 410)을 지원하였다.

경남도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도모를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지원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및 지원대상 자격을 확대하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추진하여 지난 7월11일(목)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기간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서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자격을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가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8월경 시·군에 시달하여 홈페이지 등에 안내 및 홍보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2013년 1,333백만원(도비 400, 시군비 933)의 사업비로 100여 세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도내 거주하는 보다 많은 저소득계층이 주거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 자료 : 도 건축과 주택관리담당  
(055)211-4434

## 2013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956호)”에 의해 건설공사비산정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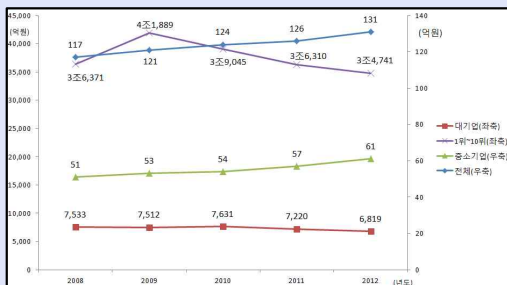
연구원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개정이 확정되어 공표하였고 개정내용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실적공사비및 표준품셈⇒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421

### 1社當 공사실적, 대·중소기업간 격차 줄어

- ▶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간 격차 148배 → 112배로 축소
- ▶ 경영비율을 제조업과 비교해 보면, 대·중소기업 모두 수익성 비율 특히 안좋아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에서 조사·발표한 ‘최근 5년간 1사당 공사실적 및 경영비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구조조정 여파로 업체수가 감소하여 1사당 공사실적(기성액 기준)이 ‘08년 117억원에서 ’12년 131억원으로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규모별 1사당 공사실적 추이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상시종업원 300인 이상, 100개사 내외, 전체의 1% 미만)은 ‘08년 7,533억원에서 ’12년 6,819억원으로 9.5%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동기간에 51억원에서 61억원으로 19.6% 증가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가 148배에서 112배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체수가 대폭 줄고(‘08년 11,396개사 → ’12년 10,126개사, 11.1%↓), 2008년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주택·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대기업들의 평균 공사실적(민간실적)을 대폭 끌어내린(‘08년 5,497억원 → ’12년 4,543억원) 탓으로 보여진다.

1~10위 대형업체의 공사실적을 보더라도, ‘08년 3조 6,371억원에서 ’12년 3조 4,741억원으로 4.5% 감소하였으며, 101위 이하 업체들은 49억원에서 57억원으로 16.3%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1~10위 대형업체들의 공사실적은 8,215억원에서 1조 928억원으로 33.0%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최근 5년간 경영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수익성에서 중소기업은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08년 227.7%/158.6%(대/중소기업) → ’12년 163.0%/103.2%로 중소기업이 월등히 좋았으며, 영업이익률은 6.3%/4.3% → 3.1%/3.3%로 대기업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12년에는 대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돼(주택부문 침체 장기화·공공공사 이윤율 하락 등이 요인) 중소기업과의 수익률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비교해 보면, 유동비율을 제외한 안정·수익성 관련 모든 비율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은 (제조업/건설업), '12년 기준 각각 5.6%/3.2%, 616.1%/213.3%로 수익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이 이처럼 수익구조가 취약한 것은 주택·부동산부문의 민간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지고 공공부문에서도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발주시스템(실적공사비·최저가낙찰제 확대 등)과 업체간 과당경쟁(수백대 일을 웃도는 평균 경쟁율) 그리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 등의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대·중소건설업 공히 영업이익률('08년 6.3%/4.3% → '12년 3.1%/3.3%)과 이자보상비율('08년 490.4%/273.1% → '12년 204.7%/235.3%)이 악화된 반면, 제조업은 변화가 없거나(영업이익률) 오히려 개선(이자보상비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업체간 양극화는 줄어드는 추세로 민간시장의 침체로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가 대/중소업체 구분 없이 수익성이 악화를 가져와 공공공사의 제값받기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물량 확대와 함께 제값 받아 제대로 시공하는 공정한 입·낙찰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며 힘주어 말했다.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조사통계팀  
(02)3485-8331

## 2013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13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를 7월 31일자 공시하였다.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
4. 열람 및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5.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및 시·도회(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도내 종합건설업체(토건) 시공능력

순위	상호	평가액(백만원)
1	두산중공업(주)	2,718,244
2	STX건설(주)	793,097
3	(주)대저건설	237,246
4	한림건설(주)	194,351
5	대경건설(주)	141,695
6	(주)대아건설	140,793
7	흥한건설(주)	127,719
8	(주)삼전건설	121,790
9	중앙건설(주)	116,794
10	(주)덕산토건	114,319

### 도내 전문건설사 업종별 1위 시공능력

전국	업종	상호	평가액(천원)
16	토공	삼중건설(주)	102,838,608
16	철근콘크리트	삼중건설(주)	74,625,527
15	강구조	대흥기업(주)	52,102,936
6	비계구조물	삼중건설(주)	46,819,066
6	상하수도설비	삼중건설(주)	40,250,760
12	보링그라우팅	삼중건설(주)	30,941,573
38	금속구조창호	에스탱크엔지니어링(주)	28,910,818
16	수중	삼중건설(주)	26,083,842
11	포장	삼중건설(주)	25,797,583
64	실내건축	(주)라비채	20,588,336
31	미장방수조적	삼중건설(주)	17,540,315
24	조경식재	(주)금솔개발	16,224,340
25	준설	(주)거해산업개발	16,109,256
22	조경시설물	(주)금솔개발	13,135,728
42	지붕판금건조	(주)건기	10,762,314
32	도장	(유)상화도장개발	9,571,719
62	석공	대웅산업개발(주)	7,259,084
19	승강기설치	(주)에이엔티	5,003,352
41	철강재설치	(주)건화기업	3,298,084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3. 7. 12(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47호)
- 예고기간 : 2013. 7. 19 ~ 8. 21.
- 개정이유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시행령 >

##### 가. 건설기술자의 등급·교육훈련 등 관리체계 개선

(안 제4조, 제42조, 제43조, 별표 1, 별표 3 및 부칙 제2조)

-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 및 교육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하여, 수행 업무별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기존 기술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고, 건설기술자가 기술등급을 최초로 부여받을 경우에 최초교육을 받도록 개선함.

##### 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안 제44조, 별표 4 및 부칙 제4조)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일반”과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일반”은 인력 7~15명, 사무실 및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유지함.
-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다.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안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및 별표 8)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일반”과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일반”은 인력 7~15명, 사무실 및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유지함.
-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 시행규칙 >

가.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안 제20조 및 별표 3)

-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을, 법에 따른 7개 사유별로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함.

나.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안 제28조 및 별표 5)

- 검측·시공 및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도 일원화하고,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도록 함.

다.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안 제31조)

-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 □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2013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044-201-3550, Fax 044-201-5551 )

■ 자료 : 법제처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입법예고일 : 2013. 8. 1.(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516호, 517호, 518호)
- 예고기간 : 2013. 8. 1. ~ 9. 1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하므로 현재 시행령에 있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며, 현재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건설업등록말소가 가능하나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말소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 빌린자와 동일하게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등 상향입법(안 제13조, 안 제55조의3, 안 제70조의2)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나.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 개정(안 제83조)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포함  
다.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처벌(안 제96조)

등록증 대여 알선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인 공공기관의 범위, 과태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해 3년 후 재검토하기 위해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

1)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규정 삭제(안 제25조)

같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부분 삭제

2)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안 26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 3)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안 제66조, 안 제68조, 안 제76조)
- 4)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7)  
참여 의무화 위반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87조의2)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으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중 '○○도지사 귀하' 등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을 받은 건설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나, 이들 회사도 공사중 신용이 하락하여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대금 보호를 위해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안 별지 제 27호 서식)
-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안 제28조)  
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이었던 회사채 평가 A이상 건설업체를 면제대상에서 제외

### □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olit.go.kr](http://www.molit.go.kr) )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 자료 : 법제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입법예고일 : 2013. 7. 5.(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10호)

□ 예고기간 : 2013. 7. 5. ~ 8. 16.

□ 개정이유

쇠퇴도시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연계·통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3.6.4)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기반시설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법률에서 정한 범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제시함

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매년 인구, 산업, 건축물 현황 등 국가적인 도시쇠퇴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안 제10조)

도시재생기획단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단장을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토록 함

마.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1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조직 설치 부담을 경감토록 함

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안 제15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도시재생전략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안 제19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을 명확히 함

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안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평가(안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계획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의 시·군 또는 구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카. 보조 또는 용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안 제36조)

국가가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는 지원항목과 국비 지원비율의 범위를 별표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는 국가가 보조하거나 용자하는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지자체 재정여건과 실적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안 제37조)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달리 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파.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범위(안 제43조)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하.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안 제48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함

□ 의견제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8월 16일(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자료 : 법제처

##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공장 생산된 고분자수지계 AQUWEL패널을 이용한 부착계 방수·방식 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세진에스엠씨
	한화엘앤씨(주)
	(주)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07호
- 기술분야 : 토목/토목구조물 보수보강 (포장 보수제외)/방식

#### ○ 내용요약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충전제, 증점제 등을 혼합시킨 Compound에 장유리섬유를 보강한 SMC(Sheet Molding Compound) 원료를 150℃ 이상의 고온에서 유압 프레스에 의해 균질한 형태로 생산된 고분자수지계 패널(Size : W 500 × H 1,000mm)과 이를 접착시키기 위해 개발된 고분자수지계 패널 전용 유·무기 혼합형 타입의 접착제(2성분형), 그리고 유·무기 혼합형 타입의 줄눈제(2성분형)로 마감하는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부착계 타입의 방수·방식기술(AQUWEL System)이다

####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공장 생산된 고분자수지계 AQUWEL패널을 이용한 부착계 방수·방식공법

## BIM기반 배근시공도 자동화 철근공사 관리시스템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창소프트아이앤아이
	(주)창민우구조건설탄트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04호
-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철근가공 및 조립
  - 건축/건축계획 및 관리/설계 및 프로그램

####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RC골조를 대상으로 BIM 모델링, 3차원 배근시공도 작성, 골조정밀 물량 산출, 공정 정보를 연계한 철근공사 관리 등 배근 설계 및 시공 프로세스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골조 품질 및 경제성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산 기술이다.

####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D CAD 데이터를 이용한 RC골조 BIM 모델에 구축되어 있는 정형화된 골조형상과 각 부재의 단면정보를 이용하여 부재간의 인접관계, 부재 편심, 단차, 개구부 등의 골조상세와 원철근의 길이 및 수량산출, 철근가공형상과 배치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2D 배근시공도로 출력하는 기술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제7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당곡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 심의일자 : 2013. 7. 16.(화)
- 요 청 자 : 양산시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심의결과
2013-07-01	실시설계 (적정성)	당곡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 위 치 :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2.8km · 사 업 비 : 247억원(공사비 170, 보상비등 77) · 사업기간 : 2014 ~ 2016년	조건부 채택

## 2013년 제8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6건
- 심의일자 : 2013. 7. 12.(화)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3-08-01	경상남도 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도로과)	조건부 채택
2013-08-02	경상남도 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감리용역)	경상남도 (도로과)	조건부 채택
2013-08-03	경상남도 하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하천과)	조건부 채택
2013-08-04	창원시 하수도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감리용역)	창원시 (하수시설과)	조건부 채택
2013-08-05	진양호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진주시 (녹지공원과)	조건부 채택
2013-08-06	사천시 산업단지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실시설계용역)	사천시 (도시과)	조건부 채택



## 건설기술심의 연왕

### 2013년 제9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3건, 실시설계 적정성 4건
- 심의일자 : 2013. 8. 29.(목) 예정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3-09-01	경상남도 향만어항분야(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향만물류과)
2013-09-02	양산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중) 모니터링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산시
2013-09-03	산청군 방재분야(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청군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3-09-04	실시설계 (적정성)	사등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924-1 일원 · 사업내용 : Q=1,500m <sup>3</sup> /일, 오수관로 9.4km · 사 업 비 : 189억원(공사비 155,감리비 13, 기타 21)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거제시
2013-09-05	실시설계 (적정성)	삼천포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 위 치 : 사천시 사등동 114-1 · 사업내용 : 반응조 덮개, 유입부하 저감시설 등 · 사 업 비 : 172억원(공사비 170, 시운전 2) · 사업기간 : 2013. 12 ~ 2015. 11	사천시
2013-09-06	실시설계 (적정성)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진정리 일원 · 사업내용 : 내부간선도로 L=3.55km · 사 업 비 : 315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광양민권경제자유 구역청
2013-09-07	실시설계 (적정성)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가덕리 일원 · 사업내용 : 내부간선도로 L=5.17km · 사 업 비 : 1,700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광양민권경제자유 구역청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6

##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3년 7월	<b>계</b>	<b>34</b>	<b>44,341</b>	<b>41,669</b>	<b>2,672</b>	<b>6.03%</b>	
	공사	토목	17	28,217	26,533	1,684	5.97%
		건축	5	7,956	7,714	242	3.05%
		기타	5	6,568	5,919	649	9.89%
	용역	3	616	568	48	7.83%	
물품	4	984	935	49	4.94%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 2013년 건축도시 R&D 7차 포럼

- 포럼명 : 2013 건축·도시 R&D 7차포럼
- 일시 : 2013.8.7.(수), 15:00~18:00
- 장소 : 대우건설 푸르지오벨리 그린프리미엄룸
- 주최/주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문의 : 성윤복 선임연구원  
(031-389-6465, nike21@kaia.kr)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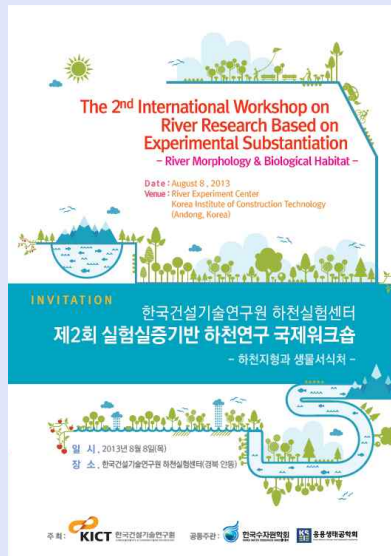
## 해외(이스라엘)산업시찰 참가안내

- 주 관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일 정 : 2013.10. 19.~ 23. / 3박5일
- 방문국가 : 이스라엘(텔아비브)
- 시찰내용
  - WATEC 2013 이스라엘 박람회 참관
  - 이스라엘 진출 및 정책관련 세미나 개최
  - 이스라엘 정부 경제부, 이스라엘 제조인 협회,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 한-이 산업연구개발 재단 등 주최
- 참가비용 : 360만원(VAT 별도)
- 문의처 : (주)에이펙스커뮤니케이션 대표  
(02)566-2575)

■ 자료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02)516-2490

## 제2회 실험실증기반 하천연구 국제워크숍

- 주제 : 하천지형과 생물서식처
- 일시 : 2013.8.8.(목), 13:00~20:00
- 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경북안동)
- 참가신청 : yuryu@kict.re.kr



■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54)843-1808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